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4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• 김영식 •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도록 하고있음.

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	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	
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	
기관의 장, 특별시장· <u>광역시장·</u>	<u>광역시장·</u>
<u>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	<u>특별자치시장·도지사</u>
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	
위임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